동두천시

시보

※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.

선람	기 관 의 장

제2022-2호

2022년 1월 5일(수)

차 례

공 고

○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공표 (공고 제2022-25호) ····· 2

동두천시 공고 제 2022 - 25호

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공표

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19세 이상 주민총수와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를 위해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(2022. 1. 12.까지 적용) 및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(2022. 1. 13.부터 시행)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18세 이상 주민총수 및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.

(2021. 12. 31. 기준)

구 분	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제1항에 따른 19세 이상 주민 및 연서 주민 수 (2022. 1. 12.까지 적용)			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2항에 따른 18세 이상 주민 및 연서 주민 수 (2022. 1. 13.부터 적용)			비 고
	19세 이상 주민 총수	연서 주민 수	산출 기준	18세 이상 주민 총수	연서 주민 수	산출 기준	
	80,301명	2,008명	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/40	81,241명	1,625명	18세 이상 주민 총수의 1/50	「공직선거법」 제18조 '선거권이 없는 자' 제외

2022년 1월 5일

동 두 천 시 장

소관 부서	기획감사담당관 (의회법무팀)	담당자 직·성명	주 태 형 지방행정주사보	전화 번호	860-2055